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096호 2015. 06. 22.(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8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26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3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3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3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36호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3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68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 공고 ----- 2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38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6.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623번안길 5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6. 1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6-1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28-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안길 5 (마전동, 하나빌1차)	2008-12-31	검단로62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28-1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안길 5-1 (마전동, 하나빌2차)	2008-12-31	검단로62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78-19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104번길 23-1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65-11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229 (검암동, 에비뉴)	2009-09-22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5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65-10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231 (검암동, 에비뉴)	2009-09-22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3-13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로 157 (오류동, 영스틸제2공장)	2012-10-25	"나가서 맞이한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07-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78 (왕길동, (주)효성자동차공업)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4-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543 (원창동, 한국전력공사)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9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01-3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138번길 31-4 (대곡동)	2013-07-30	설원로 시작지점부터 약 1,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01-2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138번길 31-6 (대곡동)	2013-07-30	설원로 시작지점부터 약 1,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94-6, 401, 397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138번길 31-8 (대곡동)	2013-07-30	설원로 시작지점부터 약 1,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97-1, 401-1, 399-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138번길 31-9 (대곡동)	2013-07-30	설원로 시작지점부터 약 1,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7-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01 (오류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1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81-5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136 (오류동, (주)옥동)	2011-11-15	인천 서구 정서진의 지명을 이용하여 '정서진로'로 명명 함.	
1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2-1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59번길 21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9-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67번길 26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6-1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 서구 경서동 673-57	인천광역시 서구 로봣랜드로249번길 46-17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봣랜드로249번길 114-22 (경서동)	건물군 분할	2009-11-11	로봣랜드로 기점에서 약 2490m떨어진 지점에서 분기된 도로
2	인천 서구 경서동 673-75	인천광역시 서구 로봣랜드로249번길 46-17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봣랜드로249번길 62-10 (경서동)	건물군 분할	2009-11-11	로봣랜드로 기점에서 약 2490m떨어진 지점에서 분기된 도로
3	인천 서구 경서동 673-74	인천광역시 서구 로봣랜드로249번길 46-17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봣랜드로249번길 62-18 (경서동)	건물군 분할	2009-11-11	로봣랜드로 기점에서 약 2490m떨어진 지점에서 분기된 도로
4	인천 서구 경서동 673-72	인천광역시 서구 로봣랜드로249번길 46-17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봣랜드로249번길 62-26 (경서동)	건물군 분할	2009-11-11	로봣랜드로 기점에서 약 2490m떨어진 지점에서 분기된 도로
5	인천 서구 경서동 673-76	인천광역시 서구 로봣랜드로249번길 46-17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봣랜드로249번길 62-8 (경서동)	건물군 분할	2009-11-11	로봣랜드로 기점에서 약 2490m떨어진 지점에서 분기된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8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6.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승학로422번길 33-2외 4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6-1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검암동 637-2	승학로422번길 33-2	2015-06-08	건물 멸실	
2	인천 서구 왕길동 659-1	검단로 468	2015-06-17	건물 멸실	
3	인천 서구 왕길동 659-1	검단로 470	2015-06-17	건물 멸실	
4	인천 서구 왕길동 660-1	완정로117번길 63	2015-06-17	건물 멸실	
5	인천 서구 석남동 111-11외 1필지	서달로130번길 29-11	2015-06-18	건물 멸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826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등록 및 폐기사유


○ 행정전산장비(인증기) 관리전환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및 폐기년월일 : 2015년 6월 22일


3. 등록 및 폐기공인 내역

“별첨 참조”

○ 등록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민원봉사과민원전용3	인증기 관리전환	2015년 6월 22일	

○ 폐기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토지정보과민원전용1	인증기 관리전환	2015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2015 - 83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5. 6.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위 치	면적(m ²)	
A-1	61	1	1,156.0	4획지로 분할	A-1	61	1	1,156.0	4획지로 분할
		2	2,270.0	8획지로 분할			2	2,270.0	7획지로 분할
소계		3,426			소계		3,426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773)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83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안전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처리기한 및 심의반복 횟수 규정
-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 중복 위촉을 제한, 횟수를 규정
-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2. 주요내용

- 안전처리는 안전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
- 위원은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할 수 없음

- 위원 위촉 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07.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763, FAX 032-560-277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타 위원회 중복 위임제한 횟수, 청렴서약서 제출 등을 명문화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 안건처리는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 ○ 위원은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할 수 없음. ○ 위원 위촉 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개정안	“ 별 지 참 조 ”
산구조문대비표	“ 별 지 참 조 ”
관계법령 발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사유 등)
관련사업 계획	“ 해 당 없 음 ”
예산수반사항	“ 해 당 없 음 ”
기타 참고사항	“ 해 당 없 음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할 수 없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위촉된 위원은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으로 위촉(임명)(임기 2년, 20 .00.00 ~ 20 .00.00)됨을 동의합니다.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근 무 처 :
- 직 위 :
- 이 메 일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 택 :
- 사 무 실 :
- 이 동 전 화 :
- 팩 스 :

20 . 00. 00.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 렬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정직
· 공정 · 성실하게 위원회의 자문 · 심의과정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반부패 · 청렴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관
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익을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00. 00.

근 무 처 :

직 위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서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p> <p>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 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p>④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p>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시간 48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간으로 한다.

-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⑥ 위촉된 위원은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제6조(회의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

<신 설>

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6.] [법률 제12974호, 2015.1.6.,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3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8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3.11.] [대통령령 제26142호, 2015.3.11.,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0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3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8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법 제113조의3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 ② 삭제 <2009.8.5.>
 ③ 삭제 <2009.8.5.>
 ④ 삭제 <2009.8.5.>

[본조신설 2006.3.2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83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06.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원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조례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5,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구정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836호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06.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원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조례내용

○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5,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83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68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중로1류68호선, 사업명:중로1-68호선 도로개설공사(미개설구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6.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변경 및 토지분할에 따른 용지조서 변경
2. 사업시행지(변경) :
 【당초】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148, 173-154번지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474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도로(중로1류68호선)
 ○ 명칭 : 중로1-68호선 도로개설공사(미개설구간)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306m, B=20m, A=6,491m²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총폭	금회	총연장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1	68	20	20	2,696 (2,004)	2,143 (1,451)	306 (306)	247 (247)	(서구 연장)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당초】

- 성명 : 동화엠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대원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가좌동)

【변경】

○ 성명 : 주식회사 일륜 대표이사 김백준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19, 디동 344호(고잔동, 산업용품유통상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04. 14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가좌동	173-148	잡	13,057	6,378	동화엠피파크 주식회사	서구 영곡로 133(가좌동)	-	-	-	
2	가좌동	173-154	도	672	113	인천 서구					
계				13,729	6,491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가좌동	173-474	잡	736	736	주식회사 일륜	인천 남동구 은청로 4-19	-	-	-	
2	가좌동	173-475	잡	195	195	주식회사 일륜	인천 남동구 은청로 4-19	-	-	-	
3	가좌동	173-476	잡	5,447	5,447	주식회사 일륜	인천 남동구 은청로 4-19	-	-	-	
4	가좌동	173-509	도	113	113	인천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	-	-	-	
계				6,491	6,491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7번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4번 참조

10.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8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규정 변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위원장 직위 변경

2. 주요내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변경(안 제3조,제6조,제9조)
 - 위원장 : 소관업무 담당국장 →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
 - 소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소관업무 담당 실.과장
 - 간사 : 소관업무 과장 → 소관업무 담당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실, 전화 032-560-4700, 팩스 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현행법령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현행법령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소관업무 담당국장” 을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 으로 변경하고, “소관업무 담당 과장” 을 “소관업무 담당” 으로 변경함.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장은 호선한다” 을 “소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으로 변경함.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취	“별 지 참 조”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5에 따라”로,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를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을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갇춘 자”를 “갇춘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호선한다”를 “소관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u>	<u>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 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제5에 따라----- ----- -----검토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 -----
제2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 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사 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제 6조제1항에 따른 각 호----- -----
1. (생 략)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3. (생 략)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고시된 중점검토항목	1. (현행과 같음) 2. 해당-----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
제3조(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 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제3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한 2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소
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
춘 자 또는 자연재해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인천
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6조(소위원회) ① (생략)

②소위원회는 재해영향성 사전
검토대상이 되는 때 단위계획별
로 소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소위원장은 호선한다.

20명 이상 40명-----

-----.

②-----
-----담당 실·국장-----
-----.

③-----
-----갖
춘 사람-----

-----사람
으로--.

④-----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5명 이상
10명-----
-----소관업무 담당 실

③ (생략)

④ 위원장은 소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검토안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게 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출된 재해저감방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9조(간사) ①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검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생략)

· 과장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항
에 따라-----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① -----

----- 1명 -----
----- 소관업무 담당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취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1항

-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기관의 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8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2016년 1월 개관예정인 청라복합문화센터에 대해 설치 및 운영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대관의 범위, 입장료, 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1,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자치법규 제정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2016년 1월 개관예정인 청라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제1조~제3조)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제4조~제7조) ○ 대관의범위, 사용허가, 사용료, 입장료, 강습료 등 시설사용에 대한 사항(제8조~제22조)
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해 당 없 음”
관계법령 발취	“별 지 참 조”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 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제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4. "입장권"이란 문화공연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입장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강습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개시일"이란 센터에서 정하는 이용기간의 초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26(경서동, 청라복합문화센터)에 둔다.

제2장 센터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2.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예술 공연·전시
2. 주민의 체육증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3.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양 교육
4. 주민의 사회참여 및 복리증진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6. 그 밖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시설의 사용

제8조(대관의 범위) ①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다목적 홀
 2. 부속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문화예술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시설
- ②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수강,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시설 대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육수강, 수영장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위 또는 추첨제 등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허가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센터가 주최하여 진행하는 문화공연·전시·그 밖의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3. 공연장 대관의 경우 문화예술 공연, 전시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가.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
 - 나. 예술성이 배제된 정치적 목적의 일반 기념 행사
 - 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단체의 단순 발표 행사

라. 기업체 또는 사설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된 공연 행사

마. 연 2회 이상 공연장 사용 취하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바.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 대관 허가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

아. 대관 승인 후 기일 내 계약 미체결 또는 사용료 미납(체납) 시

자. 센터의 승인 없이 과도한 교환권 발행으로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

차.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카.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

제12조(사용시간) ① 센터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1. 공연장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심야 : 22:00 ~

2. 체육시설

가. 조기 : 06:00 ~ 09:00

나. 오전 : 09:00 ~ 13:00

다. 오후 : 13:00 ~ 18:00

라. 야간 : 18:00 ~ 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3조(입장료 징수) ① 센터의 입장료는 공연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되, 공연·전시 또는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장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지정 예매처에서 예약 판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예매처는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영하며, 이 때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는 지정 예매처 요율에 따른다.

③ 센터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은 서구 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하되, 수입금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은행 계좌에 예치 후 월 단위로 서구 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및 강습료 징수) ① 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료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강습료는 시설 등(수영장, 다목적실, 공연장, 전시실, 편의 수익시설 냉·난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시설 대관료, 교육 수강료 및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③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다.

1. 문화·체육 강습료(교육 수강료, 수영장 이용료 등)는 신청과 동시에 징수
2. 시설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2호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및 강습료는 서구 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하되, 수입금 관리 상 필요한 경우 은행계좌에 예치 후 월 단위로 서구 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행사 및 경기
2.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센터가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무료 공연, 단 유료 공연에 대하여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 · 전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무료공연 · 전시
3.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순수예술활동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전시

제16조(입장료 및 강습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 할 수 있다.

1.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7.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②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입장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한다.

1. 센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3. 입장권 구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연하루 전 17시까지 예매처 방문 및 유선 상으로 환불 요구 시

제18조(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한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0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5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을 공제한 후 반환

② 납부된 강습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날까지 수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강습료를 공제 후 반환한다.

제19조(센터의 임대) ①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1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강사 배치) ①구청장은 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회원모집 등) 센터에서 개최하는 문화·체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을 모집 할 수 있다.

1. 공연장 회원은 유료회원 및 무료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회비는 관장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2. 체육시설 회원은 정기과목 수강자에 한해 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회원 모집은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3. 회원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가.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였을 경우

나.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다. 그 밖에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의로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휴관) ① 회관은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장이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이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청라복합문화센터 사용료(대관료,이용료) 및 강습료 징수 기준 **(제14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공연 대관 1일이라 함은 09:00 ~ 22:00 까지를 말한다. 단, 체육시설 및 그 밖의 시설 기본 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한다.
- 2) 토·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 사용료에 20퍼센트를 할증 적용한다.
-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본 대관료 할인 및 감면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 가) 공연장의 평일 사용에 한해 09:00~1200 이용시 공간 사용료의 40%를, 13:00~17:00 이용시 공간 사용료의 30%를, 09:00~17:00 이용시 공간사용료의 20%를 감면한다
 - 나) 장기대관(10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실 사용료에 한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공간 사용료에 한함, 장비 사용료는 제외함).
 - 다) 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서구 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 대관료에 20퍼센트를 할인 적용할 수 있다(공간사용료 및 장비 사용료 포함)
 - 라) 3개 항목 이상 할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 4) 개별기준 중 1)부터 3)까지의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 5) 공연 종료 후 공연 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 6) 순수예술은 국악, 풍물, 순수음악, 클래식,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를 말한다. 다만, 공연의 규모 및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뮤지컬 대관료를 적용한다.
- 7) 준비 대관은 무대설치, 연습,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8) 시연회 및 공개 리허설은 공연 대관료에 준한다.
- 9) 냉방비, 난방비는 1시간 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 가동 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 6월 ~ 8월 까지, 난방 11월 ~ 3월 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10)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 11) 부대시설 사용료와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개별기준

-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 1회)

구분 / 시설명		단위 (부가가치세별도)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음악 / 행사	비고
공연장	공연대관	1일	400,000	600,000	800,000	
	연습/준비	오전	80,000	100,000	140,000	
		오후	100,000	120,000	160,000	
		야간	120,000	140,000	180,000	
		철야(3시간)	300,000	320,000	360,000	
전시실		1일 (09:00~22:00)	100,000	- 분할대관 시 대관료의 50% 적용 - 1일 대관료의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 당 30% 가산		

* 순수예술 : 국악, 풍물, 순수음악, 클래식,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

2. 문화 · 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나목의 문화강좌 ·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 나목의 문화강좌 · 생활체육프로그램 중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나. 개별기준

1) 문화시설 사용료

- 다목적실

(단위 : 원 / 월)

구분		사용료
문화강좌프로그램		10,000 ~ 50,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인	30,000 ~ 200,000
	중·고생이하	25,000 ~ 200,000
유아 · 초등생 교육프로그램		25,000 ~ 150,000
유아체능단		60,000 ~ 340,000
기타		· 위 사용료는 월 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 1회부터 주 5회 범위 내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2) 체육시설 사용료
- 수 영 장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자유이용		그룹지도
		정기	1일입장	
사용료	25,000 ~ 80,000	25,000 ~ 70,000	1,500 ~ 4,500	100,000 ~ 200,0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 (단, 일요일은 제외) · 공휴일의 1일 자유이용은 20퍼센트 할증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2.12)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1999. 2.12)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 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는 공유재산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